‘신의주·안동’ 지역 밀무역 단속의 변화와 밀수출품 운반업자의 대응(1929~1937)*

김 태 현**

1.머리말
2. 신의주의 실업난과 ‘대규모·조직적’ 밀수출 운반업의 대두
  1) 생계유지를 위한 밀수출품 운반업자 조직의 형성
  2) 밀수출품 운반업자의 생계유지와 중첩된 제국의 이해관계
3. 만주국 수립 이후 밀수출 단속 강화와 밀수 양상의 변화
  1)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정책과 운반업자의 생존 문제
  2) 운반업자의 생존 모색과 ‘대규모·조직적’ 밀수의 소멸
4. 맺음말

1. 머리말

자본주의 국가는 도시로 몰려든 농민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도심의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도시 내부에 거주할 수 없었던 이들은 변두리에 거주했다.[1] 따라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은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갖추기 전에는 농촌과 마찬가지로 생계가 불안정했다.[2] 이처럼

* 본 논문은 2019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클러스터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1) 마이크 데이비스(김정아 옮김), 2007『슬럼, 지구를 뒤덮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돌베개.
2) 헬렌 사파(김명혜 옮김), 1990『산 후안의 빈민들: 프에르토 리코의 도시빈민 문화』, 敎文社.

최저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빈민들이 격증했고 이들은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여 생계를 마련했다.[3)]

위와 같이 도시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토지와 주거 상실, 실업, 질병과 사망 위기 증가, 공동자산 상실이라는 빈곤 위기에 처했음에도 식민권력의 주택공급, 취업, 의료 서비스 제공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4)] 따라서 빈민들은 생계수단의 전환과 다변화를 통해 생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1년에 15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고, 도시로 이주한 이들은 대부분 토목공사장의 막일꾼, 날품팔이로 편입되거나 이마저도 못 구해 실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5)] 식민권력은 궁민구제토목사업·각종의 농촌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6)]

그런데 신의주로 가면 밀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밀수업을 하기 위해 신의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은 밀수업이 성황을 이뤘다.[7)] 요컨대 '비공식 경제'인 밀수업은 신의주 빈민의 생계유지 수단

---

3) Mejia, Maria Clara. 1999 "Economic Dimensions of Urban Resettlement:Experiences from Latin America." *Michael Cernea. eds. The Economics of Involuntary Resettlement: Questions and Challenges.* Washington, D.C.:World Bank.

4) 김경일, 2004 「20세기 전반기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노동사와 노동 운동』, 문학과 지성사; 양미숙, 2006 「1920·1930년대 부산부의 도시빈민층 실태와 그 문제」 『지역과 역사』 19; 김태웅, 2009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정경운, 2013 「일제강점기 광주읍 '궁민(窮民)' 연구: 천정(泉町) 궁민가옥 철거사건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35; 조영윤, 2013 「1920~1930년대 빈민실업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이명학, 2019 「1920-30년대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의 구상과 변질」 『民族文化硏究』 82.

5) 김경일, 1986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사회와역사』 3; 강만길, 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비; 김윤희, 2019 「빈민 내부의 위계적 분할, 유교적 통치와 근대적 통치의 연속과 단절」 『현대유럽철학연구』 54.

6) 정연태, 1990 「1930년대 '조선농지령'과 일제의 농촌통제」 『역사와 현실』 4; 정태헌, 1991 「1930년대 식민지 농업정책의 성격전환에 관한 연구」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이상의, 2006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고태우, 2012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궁민구제토목사업과 지역개발」 『역사와 현실』 86.

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러한 신의주 지역의 밀수업은 식민지 시기 동안 국경 문제의 핵심 중 하나였다. 도문회담에서 총독부 경무국장이 '신의주-안동'(이하 '신-안') 지역의 처리해야 할 문제로 국경경비와 밀수문제를 손꼽았고[8] 경무국장은 특히 '신-안' 지역에서 밀수단속에 따른 분쟁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밀수 방지를 위해서 '신-안' 간 밀수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9] 또한 '안의국경밀수방지대책타합회'가 1936년 10월 22일 개최되었다.[10] 이후 통제경제 하에서 신의주 지역의 경제사건 수리 인원은 1위였는데, 대부분 밀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인다.[11] 위와 같이 신의주의 빈민들은 식민지 시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밀무역에 가담했다.[12]

본고에서는 1929~1937년의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밀수는 밀수출과 밀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1920년대 후반 밀수라고 하면 모두 신의주의 밀수출[13]이라고 할 정도로 밀수입 보다는 밀수출이 빈민의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중요했다. 즉, 이 시기 빈민의 '비공식 경제'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밀수출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국가 권력은 이해관계 따라 밀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유리할 경우 묵인 혹은 장려했다. 식민지 기간 동안 밀수입은 관세 손해 때문에 적극적 단속의 대상이었다.[14] 반면 '대규모·조직적' 밀수출[15]은 1929년~1932년 동안 사실

7) 우선 농촌의 피폐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의 피폐로 농민에게 다른 활로를 구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결과 신의주의 밀수상황을 듣고 모여든 자가 많은 것(中村美賀, 「新義州の密輸」『警務彙報』 344, 1934년 12월자, 79면).

8) 「圖們會談으로 國境警備强化」『每日申報』, 1936년 11월 3일자.

9) 「歷史的圖們會談 鮮滿一如의 大策과 統治史上新紀元을 劃定」『每日申報』, 1937년 1월 2일자.

10) 「安義國境密輸防止對策打合會會議錄」, 1936.10.22.(B09040535600).

11) 이은희, 2014 「1940년대 전반 식민지 조선의 암시장: 생활물자를 중심으로」『동방학지』 166, 270-273면.

12) 「深刻한 生活難으로 密輸犯逐年激增 五年前보다 六倍增加」『朝鮮中央日報』, 1933년 11월 4일자.

13) 밀수라고 하는 말은 밀수출입의 양자를 모두 뜻하지만, 현재 밀수의 방면은 모조리 밀수출이다(中村美賀, 「新義州の密輸」『警務彙報』, 1934년 12월자, 78면).

상 장려되었다가 만주국 수립 이후 '무관용 단속'이 이루어졌다. 즉 식민권력과 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밀수출이 묵인 혹은 장려된 시기와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제의 이해관계 변화 속에서 조선인 빈민계층의 생계유지 수단인 밀수출의 성격 변화와 밀수단속 강화에 따른 운반업자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밀수를 비공식적 교류·빈민의 생계유지로 파악했다.[16] 지역민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밀수가 주목된 것이었다. 한편 이것이 제국과 연결된 문제였다는 것을 제기한 야오징즈(姚景芝)·쉐펑즈(薛鵬志)는 밀수출에 가담한 조선인들을 '일본의 앞잡이'로 평가했다.[17] 결과적으로 만주국 수립 이전 조선인의 밀수출 운반업은 중국경제침략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이 시기의 조선인의 밀수출품 운반업은 '일제의 앞잡이' 이상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선 내 저임금-실업 문제가 조선인들이 밀수출에 가담한 원인이었음을 언급한 연구[18]가 있는데 만주국 수립 이후 밀수단속의 변화와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의 귀결을 분석하지 않았다.

---

14) 중국 소주를 밀수입하다가 단속에 의하여 익사한 경우가 있었으며, 설탕 밀수입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다(「密輸入타가 溺死」『時代日報』, 1924년 9월 24일자; 「時局標榜 强盜, 義州에 횡행하는 4명」『時代日報』, 1925년 6월 16일자).

15) 이 시기 밀수출은 50~1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금, 아편 등 수출금지품과 전매제품의 밀수출품은 은밀히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상당수의 인원이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대량의 밀수출품을 운반했다. 국경 밀수의 새로운 전술이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조직적' 밀수출단은 이전 시기와 다른 형태를 보였다(「密輸が巧みに新戰術を考案」『朝鮮新聞』, 1931년 11월 8일자).

16) 이은희, 2011 「일제하 조선·만주의 제당업 정책가 설탕유통」『동방학지』 153; 이은자, 2014 「중일전쟁 이전 시기 중국의 국경도시 安東의 이주민-교류와 갈등의 이중주」『중국근현대사연구』 62.

17) 姚景芝,薛鵬志, 2006 「日本策動朝鮮浪人對中國東北的走私」『河南師范大學學報』 33.

18) 졸고, 2018 「'신의주·안동'간 밀무역 단속 전개과정과 조선총독부의 대응(1928~1932)」『한국사연구회』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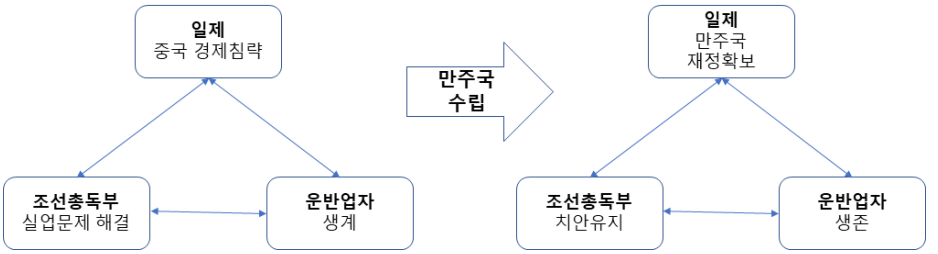

〈그림 1〉 밀수출을 둘러싼 각 주체의 이해관계 변화

본고는 위의 연구 성과 속에서 〈그림 1〉과 같이 밀수출을 둘러싼 각 주체의 동상이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주국 수립 이후 적극적으로 밀수출을 단속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19] 단순히 조선인 밀수출품 운반업자를 '일본의 앞잡이'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빈민인 운반업자가 밀수출에 종사한 이유는 제국 차원의 중국경제침략이라는 이해관계와 결이 다른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본고는 밀수출 운반업자의 형성과 연구의 공백 지대인 만주국 수립 후 밀수단속 정책과 운반업자의 대응 분석을 통해,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의 귀결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신의주부의 실업난으로 인한 밀수출품 운반업 조직의 형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만주국 수립 이후 밀수출 단속정책의 강화 과정과 운반업자의 대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 자료는 신문과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外務省外交史料館-戰前期外務省記錄-E門-3類-6項 密輸出入에 소장된 문서이다. 위 자료는 '신·안'의 대규모 조직적 밀수출 문제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관동청-조선총독부-남경정부가 서로에게 보낸 전보를 묶은 철이다.

밀수라는 용어는 본래 밀수출과 밀수입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또한 주체에 따라 밀수출과 밀수입의 용어는 각각 쓰인다. 따라서 본고는 편의상 신의주에서

19) 만주국 수립 이후 만주국 재정확보와 만주 개발에 밀수출은 장애가 되었다. 요컨대 국민정부가 밀수출로 입었던 피해를 고스란히 만주국이 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주국 수립 이전 암묵적으로 장려되었던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은 이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안동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밀수출이라고 한다. 한편 신의주의 밀수출을 안동 입장에서는 밀수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또한 편의를 위해 밀수출로 수정하고자 한다.

2. 신의주의 실업난과 '대규모 · 조직적' 밀수출 운반업의 대두

1) 생계유지를 위한 밀수출품 운반업자 조직의 형성

조선총독부는 조선 북부개발을 위해 남부지방 노동력을 북부지역으로 이주시키고자 했다. 또한 가난한 농민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다. 그중 함경도 · 평안도는 여타 지역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20] 이와 함께 신의주는 쇼와제강소 설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1929년 12월부터 1930년 2월 말까지 3개월 만에 조선인 1,877명 이상이 신의주로 몰려들었다.[21] 개발붐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자 주택공급, 취업,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취약했던 신의주에서는 이주민의 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1932년 9월 쇼와제강소 설치 장소가 만주의 안산으로 결정되었다.[22] 안 그래도 실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신의주의 조선인은 설상가상으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23] 이 같은 극심한 실

20)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은 다음을 참조 이상의, 앞의 책, 133-141면.

21) 「昭和製鋼所設置說로 新義州人口大激增」『每日申報』, 1930년 4월 13일자; 「新義州의 人口」『每日申報』, 1930년 6월 29일자; 「新義州の人口屆出數と大差」『朝鮮新聞』, 1931년 11월 14일자. 신의주 인구변화는 다음을 참조 김승, 2018 「일제시기 국경도시 신의주의 인구 변동과 도시공간의 변화」『로컬리티 인문학』 19.

22) 소화제강소 설치를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은 다음을 참조 小林道彦, 2001 「政党政治と滿州経營: 昭和製鋼所問題の政治過程」『國際環境のなかの近代日本』, 芙蓉書房出版; 김승, 2018 「일제시기 다사도항(多獅島港) 개발과 신의주 · 다사도간의 철도부설」『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23) 1930년 20%대였던 실업률은 1932년 30%를 넘었다(府及指定面に於ける失業狀況調査, 『朝鮮社會事業』 8-6, 1930년 6월자, 12-17면;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科, 『昭和七年六月末調朝鮮に於ける失業照査』, 1932년 10월자, 24면; 「鮮に於ける失業調査」『調査月報』 6-3, 1935년 3월자; 「쫓겨가는貧民의千二百餘戶慘狀」『東亞日報』, 1928년 1월 11일자; 「彌勒

업난 속에서 조선인들은 절대적 빈곤으로 날품팔이 및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갔다. 심지어 생활난을 견디지 못한 조선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24)]

신의주 개발붐에 큰 기대를 품었던 조선인들은 실업난 속에서 생계유지 수단을 찾아야 했다. 당시 신의주로 가면 밀수로 먹고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났고, 실업으로 인해 하루하루 먹고 살길이 막막했던 조선인들은 이 지역으로 가서 밀수업에 가담했다. 요컨대 조선인에게 생계유지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밀수품 운반업이었다.

예전부터 신의주 주민들은 소규모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신의주 외곽과 안동의 육도구에 거주하는 빈민이었다.[25)] 안동해관은 신의주의 밀수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빈민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관세수입 손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밀수출을 적극 단속하지 않았다.[26)] 그런데 1929년 이후 중국이 관세자주권을 점차 회복하면서 화주-청부인-운반업자 구도의 '대규모·조직적' 밀수출단이 성행했다.[27)] 밀수출단의 화주는 신의주와 안동의 유력한 일본인 및 조선인 잡화상이었으며 운반업자 대부분은 조선인이었다.[28)] 관동청은 운반업자 조직을 다른 직업이 없는 '무뢰한 운반

洞一帶五十八戶窮境」『東亞日報』, 1928년 1월 22일자; 「生活難自殺」『東亞日報』, 1929년 9월 9일자; 「貧困하야飮毒自殺 아편을 먹고」『每日申報』, 1929년 10월 28일자; 「十一月末現在 新義州失業者 二千百名」『中央日報』, 1931년 12월 14일자; 「설 압두고 飢寒에 우는 千餘貧民에 施米 신의주서 보안게에서」『每日申報』, 1932년 1월 27일자; 「平安北道, 薄給の身で貧困者を救助す, 新義州署彌勒洞派出所勤務巡査の溫い心」『朝鮮新聞』, 1934년 2월 1일자.

24) 졸고, 앞의 논문 참조.

25) 이은희, 2011「일제하 조선·만주의 제당업 정책과 설탕유통」『동방학지』153, 364면; 이은자, 2014「중일전쟁 이전 시기 중국의 국경도시 安東의 이주민: 교류와 갈등의 이중주」『중국근현대사연구』62.

26) 在安東領事 米澤菊二→在奉天總領事代理 森島守人, 「當地ニ於ケル密輸取締ニ關スル件」, 1932년 3월 1일자 83면(B09040547700).

27) 「平安北道, 密輸が激增, 巧みに新戰術を考案し, 稅關當局も全く手古摺り目下新計畫を考案」『朝鮮新聞』, 1931년 11월 8일; 「平安北道, 鴨綠江中の島附近から日本酒の大密輸出, 警備船が追ひかけて威赫發砲して大騷ぎ」『朝鮮新聞』, 1931년 10월 30일.

28) 森岡領事→幣原外務大臣, 「南京發公使宛電報公第二二五號末段ニ關シ」, 1930년 7월 25일, 300면(B09040547).

조합'으로 파악했다.[29] 요컨대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밀수출품 운반업자 조직이 형성되었고 운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뢰한' 조선인은 3천여 명에 달했다.[30]

대부분의 조선인 밀수품 운반업자는 신의주의 미륵동과 민포동에 거주했다. 미륵동과 민포동은 신의주 제방 밖 지역으로 모래밭이나 다름없는 매우 빈곤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빈민굴 중에서도 극 빈민굴이라고 할 정도로 나무로 만든 간이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며, 밀수 이외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31] 그래서인지 두 지역의 별명은 '밀수소굴'이었다.

이처럼 식민지 자본주의의 저임금구조와 개발수탈체계 속에서 극심한 실업문제와 최저생활을 속에서 빈민들은 생계를 위해 밀수출품 운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 민중들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취약성으로 인한 실업, 저임금, 농촌 피폐로 기존의 물물교환 수준의 밀수에서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에 가담했고, 운반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조선인들이 급증했다.[32] 밀수출의 양도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품목인 면포는 한 해 평균 약 200만 원 이상이 밀수출되었다.[33]

다음으로 이들의 조직을 살펴보면, 밀수출품 운반업에 종사하는 조선인은 3,000여 명이었고 운반업자는 조직 당 30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34] 운반업자들은

---

29) 關東廳警務局長→拓務次官・外務次官・天津總領事・奉天總領事・朝鮮總督府政務總監, 「密輸出入取締狀況」, 1932년 6월 15일, 197면(B09040547900).

30) 野添孝生→庵谷忱, 「報告書」, 1930년 7월 9일, 19면(B09040546800).

31) 書記長 野添孝生→會頭 庵谷 忱, 1929년 7월 9일, 「安東ニ於ケル密輸入ニ關スル件」, 19-20면(B09040546800); 新義州稅關長→財務局長, 「新義州ヨリ水路輸出貨物ノ於ケルニ關スル件」, 1929년 11월 11일자(B09040547000), 188면; 「쫓겨난 빈민- 一천 二백여 호의 참상, 신의주 三동리의 죽을 지경」『新韓民報』, 1928년 2월 9일; 「密輸取締りで失業者一千名」『京城日報』, 1931년 2월 28일; 「新義州의失業 룸펜七百餘名」『東亞日報』, 1933년 7월 23일; 「餓死線上의 極貧百餘戶」『東亞日報』, 1934년 2월 1일자.

32) 김태현, 앞의 논문, 334면.

33) 일본의 대외무역에서 섬유제품은 1929년 수출 총액의 69.8%, 1937년 55.3%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1929년 수입 총액의 35.0%, 1937년 34.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각 제국의 식민지에서 일본 면포에 대한 관세인상을 실시하면서, 일본의 면포 수출은 위기를 맞았다(新義州稅關, 1932『新義州港一般』, 新義州稅關, 24면; 金志煥, 2011「1930年代 華北日本紡織工業 建設의經濟的背景」『中國學報』64, 317면; 서정익, 2008『전시일본경제사』, 혜안, 153-154면).

34) 안동 육도구에도 조선인 1,000여 명의 운반업자 조직이 있었다[關東廳警務局長→拓務次

특정한 두목 아래 행동했고, 이 지도권은 부자간 이어졌다.[35] 운반업자의 수입은 건당 1원에서 최대 2원이었으며[36] 이것은 당시 신의주 부내에서 기술을 요하는 전신 공사 인부, 석공의 수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37] 그러다 보니 단속을 강화할 경우 지방경제계가 혼란해지고 운반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생업을 잃는다고 할 정도였다.[38] 이처럼 '무뢰한 운반업'은 신의주 빈민층의 주요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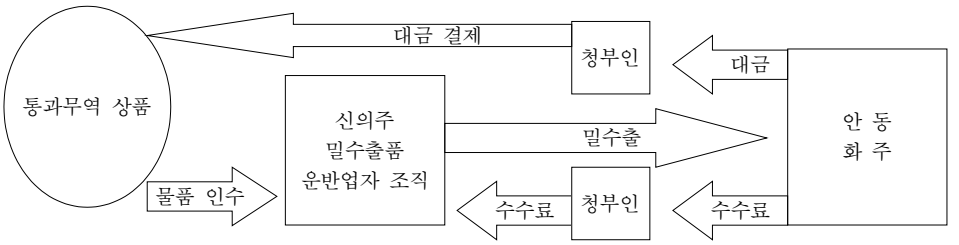

〈그림 2〉 밀수출단의 거래관계

〈그림 2〉는 밀수출단의 거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운반업자는 안동 화주에게 대금을 받아 신의주에 도착한 밀수출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물품을 보세창고 혹은 사재창고에 보관한 다음 밀정이 신호를 주면 물품을 안동으로 운반했다.[39] 이들은 압록강 해빙기에는 정크선을 이용했고, 결빙기에는 썰매와 도보로 밀수출을 감행했다.[40] 요컨대 밀수출품 운반조직은 안동의 화주가 신의주로 올라온

官·外務次官·天津總領事·奉天總領事·朝鮮總督府政務總監, 「密輸出入取締狀況」, 1932년 6월 15일자, 197면(B09040547900)].

35) 姚景芝·薛鵬志, 앞의 논문, 198면.

36) 보통 밀수출 수수료는 밀수출품 가액의 화주 혹은 운반청부인은 밀수출에 성공하면 현금으로 썰매 1대당 최대 6원이었고, 배를 이용한 경우는 1원~1원 50전을 밀수출품 운반업자에게 지불했다(在安東領事 米澤菊二→在奉天總領事代理 森島守人, 앞의 자료, 1932년 3월 1일, 82-83면; 中村美賀, 앞의 자료, 92-93면).

37) 조선인 전신 공사인부의 일급은 0.51원~1.40원, 석공은 1원~1.5원이었다(新義州商工會議所, 앞의 자료, 3면).

38) 野添孝生→庵谷忱, 앞의 자료, 19면(B09040546800).

39) 中村美賀, 앞의 자료, 92면; 「密輸賃안낸다고 密輸事實密告」『東亞日報』, 1934년 7월 9일자.

통과화물의 대금을 선납하면, 이후 적당한 시기에 물품을 옮긴 후 수수료를 받았다.

한편 밀수출 수수료는 후불제였기 때문에 화주 혹은 운반청부인이 밀수출품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밀수출품 운반업자는 밀고로 대항했다. 예를 들어 1934년 7월 화주 이케다 세이쇼쿠(池田正直)는 가액 1천원의 면포를 밀수출하고, 수수료 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운반업자는 안동경찰서에 밀고했고, 이케다는 밀수출품 전부를 압수당했다. 위와 같이 밀수출품 운반업자의 밀고는 성공한 밀수를 실패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였다. 따라서 수수료 후불 지급은 밀수출 운반업자의 밀고와 대칭되어 밀수단의 계약관계를 형성했다.

2) 밀수출품 운반업자의 생계유지와 중첩된 제국의 이해관계

밀수출품 운반업은 안동해관의 통관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동청은 안동 만철부속지[41]의 절대적 행정권을 내세우며, 중국 해관원의 무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영사관 경찰이 중국 해관원의 곤봉을 빼앗을 정도였다.[42] 이후 열강의 비판과 총세무사의 압박으로 관동청령 『밀수취체령』을 제정 했지만 그 법의 적용과 밀수단속 협조는 최소한도로 이루어졌다.[43]

게다가 조선총독부는 운반업자에게 설유와 자진신고라는 '온화 수단'만을 사용했다.[44] 이처럼 일본상품의 대중국 경제침략이라는 측면에서 밀수출품 운반업자

40) 이 지역은 결빙기에는 마차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정도였고, 여름에도 왕래가 어려울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다(堂本貞一, 1931『朝鮮の稅關』, 5면).

41) 안동의 만철 부속지는 주로 중국인의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1940년 4월말에서 5월초 일본군은 안동을 점령한 후 일보인회를 설립했다. 1906년 만철 설립 이후 중국인의 토지를 구매해 부속지를 설정했고, 1910년 만철은 안봉철도 개축 과정에서 선로용지와 기차부역부지 17.7ha를 수매하고, 안동현의 육도구와 칠도구 등지의 민간 토지 2만여 畝를 편입해 일본인 시가지를 세웠다. 또한 1923년 거류민단에서 경영하던 지역이 만철로 편입되어, 1936년에 이르러 안동의 만철 부속지는 5.36㎢의 토지를 보유했다(郭鐵椿주편・韓俊英・부주편・신태갑 외 옮김, 2012『일본의 대련 식민통치40년史』, 선인, 287-288면).

42) 米澤領事→幣原外務大臣,「第100號ノ一」, 1930년 12월 5일, 353면(B09040547300).

43) 在安東 領史 米澤菊二→在奉天 總領事代理 森島守人,「當地ニ於ケル密輸取締ニ關スル件」, 1932년 3월 11일, 81면(B09040547800).

는 제국과 조선총독부의 간접지원을 받았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3,000여 명의 운반업자를 단속한다면, 실업문제가 더욱 격증할 것을 우려했다.[45] 그러나 위법적인 밀수업을 조선총독부가 실업문제 완화로 인식한 것은 불법적인 직업을 용인해야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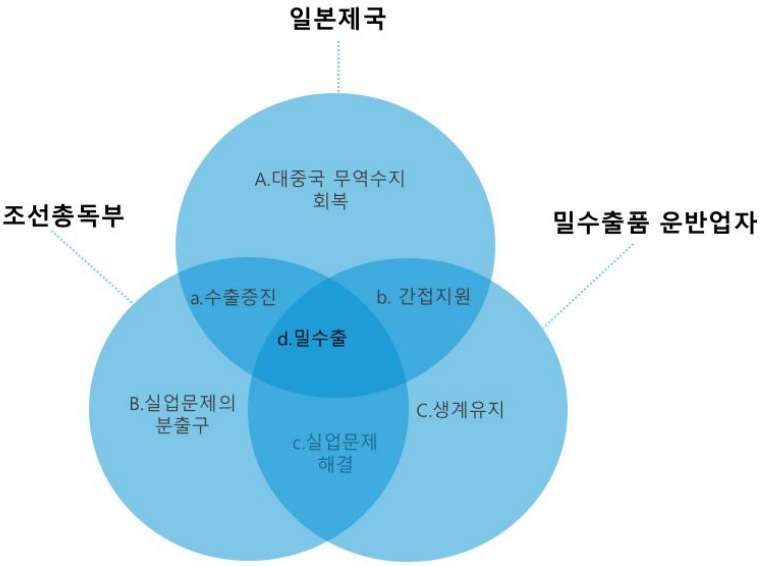

〈그림 3〉 밀수출을 둘러싼 각 주체의 이해관계

〈그림 3〉은 일본제국·조선총독부·밀수출품 운반업자의 이해관계 중첩을 표현한 것이다. 일본제국은 대중국 무역 수지를 회복(A)하기 위해 덤핑 수출뿐만 아니라 밀수출을 간접지원(b)했다. 이에 조선의 신의주는 일본상품의 수출증진(a)을 위한 중계기지가 되었다. 한편 신의주 빈민은 생계유지(C)를 위해 밀수출품 운반업에 종사했다. 이러한 밀수출품 운반업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실업문제(c) 해결의 한 방편으로 방임했다. 결국 밀수출(d)는 제국·조선총독부·밀수출

44) 新義州稅關長→財務局長, 「新義州ヨリ水路輸出貿易ノ安東ニ於ケル密輸入ニ關スル件」, 1929년 12월 21일자, 187면(B09040546900).

45) 野添孝生→庵谷忱, 앞의 자료, 19면(B09040546800).

품 운반업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발생했다.

따라서 1929년~1932년 만주국 수립 전까지 '신의주-안동' 지역의 조직적인 밀수출품 운반업은 관동청·영사관의 안동 부속지 행정권을 활용한 밀수출 간접지원, 신의주 경찰서의 묵인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결국 수십여 명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밀수출품 운반업자를 안동 해관원 십여 명이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46]

이 과정에서 조선인과 안동 해관원의 출동이 잦았다.[47] 그런데 1930년 10월 20일 조선인 운반업자가 해관원을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단도로 상해를 입히는 등[48] 충돌이라기보다는 운반업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가까웠다. 게다가 일본영사관 경찰관은 조선인과 해관원의 충돌을 방관하거나 운반업자를 체포하더라도 곧 돌려보냈다.[49] 이처럼 밀수출품 운반업자는 안동영사관 경찰서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50]

또한 안동영사관은 운반업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인이 밀수출 도중 중국 해관출장소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인 1명은 불기소, 5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리오카 영사는 중국 외교부장에게는 집행유예를 기밀로 했다.[51] 안동부속지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재판 권한은 영사에게 있었는데 영사는 운반업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중국 측에는 징역 3년에 대해서만 통보한 것이다.[52] 이처럼

---

46) 林總領事→幣原外務大臣, 「第六三◯號ノ一」, 1929년 10월 14일자, 43면(B09040546800).

47) 米澤領事→幣原外務大臣, 「第一◯三號ニ關シ」, 1930년 11월 6일자, 371-372면(B09040547300).

48) 米澤領事→幣原外務大臣, 「第一一三號」, 1930년 12월 16일자, 412면(B09040547300).

49) 上村領事→幣原外務大臣, 「第三二號ノ一」, 1930년 12월 20일자, 419면(B09040547300).

50) 중국입장에서는 명백한 일제의 경제침략이었고, 조선인들은 일본의 '앞잡이'·'조선낭인'이였다. 이에 대해서 안동해관원은 일본의 비호 아래 조선인들이 중국해관원을 공격하거나 해관을 파괴하는 등의 일을 서슴치 않는다며, 파업을 일으킬 정도였다[(姚景芝·薛鵬志, 앞의 논문, 16면; 米澤領事→幣原外務大臣, 「第一一四號」, 1930년 12월 18일자 418면(B09040547300)].

51) 森岡領事→幣原外務大臣, 「第六號(極祕), 1930년 7월 25일자(B09040547200).

52) 深澤鐵造: "밀수문제는 치외법권의 철폐 전후로서 구별할 수 있다. 철폐 전에는 지금의 제방선 까지 무사히 돌파가 가능하였던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관문을 돌파하면 부속지였기 때문에, 밀수자가 단체적 행동을 하는 것이 많았다(朝鮮貿易協會, 1992 『朝鮮貿

일제는 운반업자를 소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을 미약하게 함으로써, 밀수출품 운반업자를 간접지원(b)했다.

위와 같이 조선인 밀수출품 운반업자는 해관원 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무력으로 밀수출을 감행할 수 있었고 영사관의 비호로 밀수출품 운반업자가 해관원에게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요컨대 압록강 결빙기에는 백여 명의 밀수출품 운반업자가 썰매로 운반했기 때문에 "대규모 밀수는 50명 내지 100여 명의 단체를 조직할 정도로 마치 병사부대 같다. 결빙의 압록강 상을 꽉 채우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었다.[53] 그럼에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던 안동 해관원은 단속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조선인 운반업자가 해관원을 압도했다.

1930년 5월 17일 조선인이 지까다비 밀수출 도중 안동 해관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1명이 익사했다. 일단 안동 영사관 경찰관은 조선인을 즉시 해산시켰는데, 경찰관이 돌아간 틈을 타 조선인들은 안동 해관출장소를 습격했다.[54]

1931년 10월 27일 대규모의 조선인이 밀수출 도중 해관원과 경찰관의 추적으로 배 세 척이 신의주로 도주했는데, 다른 두 척이 갑자기 나타나 해관감시선에 투석을 가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원을 밝혔지만, 조선인들은 투석을 지속했다. 결국 경찰관이 허공에 위협 사격을 하자 비로소 조선인들은 투석을 멈추고 돌아갔다. 투석으로 인해 경찰관 1명은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해관감시선은 이백여 원의 피해를 받았다.[55]

위 두 사건은 영사관 파출소 경찰관이 밀수출 단속에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해관원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은 체포나 조준 사격보다는 허공에 총을 쏴서 밀수출품 운반업자를 쫓아내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다. 또한 밀수출품 운반업자는 일본인 경찰관을 확인하고도 투석을 계속했다. 즉, 평소 밀수출을 방임하던 경찰관의 존재는 운반업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운반업자 조직은 경찰관이 돌아가면 해관출장소를 습격하

易史』, 民俗苑, 347면).

53) 朝鮮貿易協會, 앞의 책, 343면.

54) 在支那臨時代理公使 重光葵→外務大臣男爵 幣原喜重郎, 「安東ニ於ケル密輸入取締ニ關スル件」, 1930년 8월 21일, 329면(B09040547200).

55) 中村美賀, 앞의 자료, 92-93면.

거나, 추격하는 해관감시선을 척후대가 공격하는 등 해관을 감시하는 밀정, 후방 대비 등이 마련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조직적이었다.[56)]

이처럼 밀수출은 중국의 관세인상, 〈그림 3〉 일본 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회복(A), 조선총독부의 실업 문제 분출구(B), 밀수출품 운반업자의 생계유지(C)가 중첩되면서 조직적으로 밀수출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32년 만주국 건국으로 (A)의 조건이 사라지면서 도리어 밀수출은 만주국 재정의 악화, 일본 엔블록권의 균열을 내는 문제로 전환 되었다.

3. 만주국 수립 이후 밀수출 단속 강화와 밀수 양상의 변화

1)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정책과 운반업자의 생존 문제

만주사변의 혼란을 틈타 밀수출은 더욱 격증했는데 마치 '자유 지대' 같았다고 할 정도였다.[57)] 여기에 사변 이후 격증한 도보 밀수출까지 합치면 총액은 약 5백 만원 이상이었다.[58)] 대표적인 밀수출품이었던 면직물은 1931년 1월 신의주에서 수출된 면직물 316,978원인데 안동의 신의주향 면직물 수입 밀수가액은 0원

56) 中村美賀, 앞의 자료, 92면.

57) [(在安東 領史 米澤菊二→在奉天 總領事代理 森島守人, 앞의 자료, 1932.3.11, 82면)].

연월	밀수출 추정액
1931.10	482,452
1931.11	552,018
1931.12	664,614
1932.1	1,015,774
1932.2	1,190,000
1932.3	1,592,000
합계	5,496,858

* 출전: 在安東領事 米澤菊二→在奉天總領事代理 森島守人, 앞의 자료, 1932년 3월 1일, 90-91면; 拓務次官 堀切善次郎→外務次官 有田八郎, 「安東密輸入ニ關スル件」, 1932년 5월 26일 179면(B09040547900).

58) 1931년 9월 25일 안동 압록강철교 감시소 이전으로, 단속이 헐거워지자, 압록강상의 배와 결빙기 도보를 주로 이용하던 밀수품운반업자들은 철교를 건너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이 잦아졌다[米澤領事→芳澤外務大臣, 「第十八號」, 1932년 3월 16일 93면(B09040547800)].

이었다.[59] 요컨대 31년 1월에 수출된 면직물은 모두 밀수출품일 정도로 만주사변기 밀수출은 격증했다.

그런데 만주국 수립과 함께 상황은 역전되었다. 일본의 중국경제 침략 일환이었던 밀수출은 이제 만주국 재정의 악화, 만주에 진출한 일본 현지기업 발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자 만주국 수립 준비 중이었던 관동군과 외무성은 밀수출 봉쇄 방법으로 세 가지 방안을 준비했다. 첫째 단속강화, 둘째 관세 삭감, 셋째 안동의 자유항 지정이었다.[60]

관동군은 1932년 2월 7일 밀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관세 삭감과 자유항 지정은 일본의 대만주 무역과 만주국 재정 확충의 문제로 밀수출 문제가 핵심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장 밀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로써 일제는 관동청 경찰을 안동에 증원 시키고, 조선 측의 단속 협조를 확인했다.[61]

만주국 수립 이후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 정무총감이 1932년 4월 만주 시찰 중 요네자와(米澤)영사를 만나 조선에서 밀수출 의심 화물의 면허는 발급하지 않기로 약조했다.[62] 추가로 1932년 5월 조선총독부 이재과장은 구체적 협조로 (1) 수출신고자에 대해 철로 수송을 권고할 것 (2) 밀수혐의자에 관한 정보를 안동 측 당국에 공급할 것 (3) 수출혐의자에 대해 경고할 것이라는 훈령을 신의주세관장과 평안북도지사에게 보냈다.[63]

또한, 관동청은 사문화되었던 관동청령 「밀수취체령」[64]을 활용해 적극 단속하

59) 在安東領事 米澤菊二→在奉天總領事代理 森島守人, 앞의 자료, 1932년 3월 1일, 91면.

60) '신국가의 성립과 같이 자유항으로 하던가 혹은 수입세율의 대삭감을 행하던지 어느 쪽이든 금후 굳이 밀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르는…신국가의 성립은 당지에 대한 밀수입의 묵인을 가능하게 한 것을 반대하고, 그 취체를 엄중히 할 필요가 생겨서…'[(米澤領事→芳務外務大臣, 「第四○號」, 1932년 2월 25월 63면(B09040547700)].

61) 회의 참석자는 군사령부 참모장 이하, 막료, 특수부장, 관동청 경무국장,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이었다[「森島總領事代理→芳務外務大臣, 「第三六六號」, 1932년 3월 7일자, 74면(09040547700)].

62) 米澤領事→芳澤外務大臣, 「第七六號」, 1932년 4월 8일자, 75면(B09040533100).

63) 森島總領事代理→芳務外務大臣, 「第八二一號」, 1932년 5월 10일자, 94면(B09040533100).

64) 제1조 밀수화물의 판매수수, 소유 또는 소지를 금한다.
제2조 압록강에서 안동현부속지에 화물을 육양할 때는 관동장관이 지휘한 소장에 의해야

기로 했다.[65] 대표적인 예로 박수길에 대한 처벌 사건이 있다. 1932년 2월 10일 조선인 박수길은 밀수출 중 안동해관원에게 발각되어 물품(면포)을 모두 몰수당했다. 그러자 박수길은 썰매 스틱으로 해관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3월 27일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66] 앞서 해관출장소를 공격한 조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비해서 박수길은 실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것은 밀수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밀수출은 '죽음과 징역을 뻔히 바라보면서 뛰어드는 행위'가 되었다.[67]

한편 안동의 자유항 지정은 만주국 관세 수입문제로 실행될 수 없었다. 자유항 지정을 통한 무관세 정책보다는 남경정부의 관세가 존치된 만주국 관세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두 차례의 관세 개정을 통해 일본의 대만주 수출 주력상품은 관세인하가 되었지만, 만주국 재정확보 문제로 관세는 일본의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았다.[68] 요컨대 1934년 제1차, 제2차 관세 개정은 일본산 상품의 관세인하와 만주국 재정확보의 길항 속에서 밀수 수수료 이하로 관세가 떨어지지 않았다.[69]

위와 같이 만주국의 관세는 밀수출이 근절될 만큼 인하되지 않았다. 그리고 법규, 수속, 단속 협조의 개선은 단속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만주국

한다.
제3조 전2조에 위반한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조 제1조에 위반한 자의 소유 또는 소지한 화물은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
關東長官太田政弘→拓務次官侯爵小村欣・森岡領事,「安東密輸入取締方ニ關スル件」, 1930년 9월 4일자, 335면(B09040547000).

65) 山岡關東長官→內田外務大臣,「第六二號」, 1932년 7월 6일 100면(B09040533100).

66) 在安東日本領事館 副領事 八八代義則,「判決」(Ref.B09040547800), 1932년 3월 14일, 96-97면.

67) 赤兎馬,「國境密輸祕話, 천양 만양 판」『삼천리』5-10, 1933년 10월 1일자.

68)「對岸棉布關稅約三割方引下げか」『鴨江日報』, 1933년 7월 11일자;「綿布關稅引下로 閑散할密輸出界」『東亞日報』, 1933년 7월 18일자;「滿洲國新關稅」『大阪朝日新聞』, 1933년 7월 19일자; 만주국 제1차관세 개정에서 면포의 관세율 저하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적었다(山本有造, 1995『滿州國の硏究』, 綠蔭書房, 349-352면).

69) 만주국의 수입관세율 개정의 때 그 개정 범위가 협소하였기 때문에…밀수출품이 증가를 보이고 있다[加藤明→全權大使,「哈商第三七○號ノ五二」, 1934년 10월 9일자, 139면(B09040533200)].

건국 이후 조선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만주에 팔더라도 3~5배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물가 차이가 심했다.[70] 그중 면포류는 만주인의 수요가 많았는데[71] 압록강에서 밀수출을 대기하고 있는 면포가 삼천 상자나 쌓여 있을 정도였다.[72] 또한 조선인의 생활난은 더욱더 심각해져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밀수출은 감소하지 않았다.[73]

그러자 만주국 민정부 경무국장 아마가쓰 마사히코(甘粗正彦)는 만주국의 세수에 밀수출이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엄중히 단속할 것을 공포했다.[74] 이에 맞춰 관동청은 만주국 건국 이후 경찰관 증파와 세관원 경찰권 부여[75] 헌병대의 원조, 만주국경비대 파견,[76] 프로펠라 추진 방식의 선박에 기관총을 적재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77] 또한 만주국은 밀수출단을 마적으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78] 그리고 만주국 재정부는 면포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재정부령 제276호를 포고하고, 21일부터 면포에 대한 단속령을 공포했다. 재정부령은 직물운송집조(증명서) 첨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79]

신의주세관은 운반업자와 단속원의 잦은 충돌을 미리 방지하고자, 6개의 감시소를 증설했다.[80] 추가로 쾌속선 4척을 추가하고 기존 밀수출 단속 전담반을 10여 명에서 54명으로 증원했다.[81] 신의주 세관은 부내 면포 밀수출 조직 90여 명을 한 번에 검거하기도 했다.[82] 그동안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에 대해서 조선

70) 朝鮮貿易協會, 1943 앞의 책, 340면.

71) 加藤明→全權大使,「哈商第三七◯號ノ五二」, 1933년 10월 9일자 141-142면(09040533200).

72)「鴨江結氷에 따라警戒森嚴 死線의二千餘密輸團」『東亞日報』, 1933년 7월 18일자.

73)「深刻한 生活難으로 密輸犯逐年激增 五年前보다 六倍增加」『조선중앙일보』, 1933년 11월 4일자;「織物密輸入取締令 安東のみに適用」『滿洲日報』1934년 9월 7일자.

74) 在安東 領事 米澤菊二→外務大臣 芳澤謙吉,「密輸取締ニ關スル警務局長ノ訓令ニ關スル件((Ref.B09040547800), 1932년 4월 14일, 114면.

75) 拓務次官 堀切善次郎→外務次官 有田八郎, 앞의 자료, 1932년 5월 26일, 180면.

76) 森島總領事代理→芳務外務大臣,「第五九號」, 1932년 10월 16일, 84면(B09040533100).

77) 森島總領事代理→芳務外務大臣,「앞의 자료」, 1932년 5월 10일자, 93면.

78)「密輸暴力團은 馬賊行爲로 看做」『朝鮮中央日報』, 1934년 7월 8일자.

79)「國境의 名物密輸를 根滅할 新法令을 頒布」『朝鮮中央日報』, 1934년 9월 6일자.

80)「安義の密輸 ギヤング化」『大連新聞』, 1934년 1월 15일자.

81)「安東, 新義州稅關의 密輸團防禦陣」『東亞日報』, 1934년 3월 30일자.

내의 통관절차의 합법성을 내세워 밀수출의 책임을 회피하던 신의주세관은 만주국 수립과 함께 단속강화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었다.

한편 신의주 경찰은 세관원과 운반업자의 충돌을 치안의 암(癌)으로 인식했다.[83] 신의주 경찰서 고등계는 조직적 밀수출을 단속강화를 발표했고, 신의주부 내의 면포 상인 명부를 작성해 이들을 관리하고자 했다.[84] 그런데 신의주 경찰은 밀수출 단속을 강화한다면, 운반업자들이 불만을 가져 공산주의 사상이나 폭동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85] 평안북도 고등과장은 밀수출 단속을 신의주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밀수출 운반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빈민의 생계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86]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만주국의 단속강화 요구에 대해서 신의주 경찰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빈민의 생계유지 수단인 밀수출을 반대급부 없이 단속할 경우 터져 나오는 치안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에 신의주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위와 같이 만주국 내의 「밀수취체령」 적극 적용, '무관용 단속'은 활발했지만, 신의주 지역의 밀수출 단속은 안동 단속 관계 관헌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준이었다.[87] 요컨대 만주국은 재정 문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밀수출 단속을 강화한 반면 신의주 경찰은 치안관리를 위한 운반업자 관리에 집중했다. 이로써 밀수출 운반업자와 안동해관의 충돌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뒤에 나오듯이 운반업자 사망 사건이 속출했다.

한편 아마가쓰 마사히코가 엄중한 단속을 예고한 뒤 일본이 접수한 안동세관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다.[88] 안동세관원은 밀수출을 막는 것이 만주국의 위

82) 「綿布大密輸團續續檢擧さる, 朝鮮新聞平安北道」『朝鮮新聞』1933년 2월 23일자.

83) 中村美賀, 앞의 자료 1934년 12월, 78면.

84) 「綿布商五十名新義州署へ集め密輸に關し嚴重訓戒 中村署長の密輸根絶策一手段」『國境每日新聞』1934년 1월 28일자.

85) 野添孝生→庵谷忱, 앞의 자료, 20면(Ref.B09040546800).

86) 「生活의 方途를 줌이 橫在한 重大問題」『每日申報』, 1936년 8월 27일자.

87) 「密輸致富도 南柯一夢」『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29일자.

88) 만주국 수립 이후 일본의 중국해관 장악과정은 다음을 참조 김지환, 2016 「만주국의 중국동북해관 접수와 동북시장의 변화」『만주학회』22.

신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다.[89] 이때부터 야간에 총성이 난다면 모두 밀수출 단속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안동세관원과 경찰관은 밀수단속에 총포를 적극 사용했다.[90]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밀수출품 운반업에 종사하던 조선인들은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에 의해 목숨을 걸고 밀수출품을 운반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2) 운반업자의 생존 모색과 '대규모·조직적' 밀수의 소멸

만주국 수립 이후 단속이 강화되었고, 안동세관원은 총기를 무장한 채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의 강화로 이전과는 다르게 밀수출 운반업자는 수와 무력으로 세관원을 압도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33년 1월 11일 80여 명의 운반업자가 썰매에 실은 면포를 밀수출을 시도했는데 도중 국경경찰대원(53명)에게 단속을 당하자 물품만 대강 챙겨 도망갔다. 또한 수십 명의 운반업자가 밀수출품을 가지고 안동에 상륙하려고 할 때 세관원의 총격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속출했다.[91]

특히 결빙기 대규모의 썰매로 밀수하는 경우 총살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92] 강에서는 운반업자가 익사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1932년 6월 21일 면포를 배 세척에서 육양 중인 조선인 수십 명에게 경찰관이 사격을 가해

89) 「密輸出界裏面蝙蝠같이夜半出動 大部分乘隙渡江」『東亞日報』, 1934년 1월 2일자.

90) 中村美賀, 「新義州の密輸」『警務彙報』 345, 1935년 1월 15일자.

91) 겨울 동안의 밥버리를 밀수출에서 얻고 있는 국경 신의주와 안동현 내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제부터는 목숨을 내어노코서라도의 각오를 가져야할 형편에 있다(「포학한 만주관헌. 동포 50명에 발포. 밀수출 하다가 당한 참사. 4명 사상, 입8명 행위불명」『朝鮮日報』, 1932년 6월 24일자; 「密輸者銃殺」『東亞日報』 1932년 7월 9일자; 「十餘密輸出團에 滿洲稅關이 또發砲」『東亞日報』, 1933년 2월 27일자).

92) 「密輸者銃殺」『東亞日報』, 1932년 7월 9일자; 「密輸『깽』의 跋扈와 鴨綠江에 展開될 血戰」『東亞日報』, 1932년 12월 5일자; 「綿布密輸犯一名 警官發砲로 卽死」『東亞日報』, 1933년 7월 6일자; 「백주에 육도구에서 경관, 밀수자 사살 경찰은 정당방위라 변명」『朝鮮日報』, 1933년 7월 27일자; 「비절 참혹한 밀수입자의 말로. 만주 세관원의 무기에 다쳐 비명 횡사자 속출」『朝鮮日報』, 1933년 9월 5일자; 「밀수입 발각. 거액 물품 압수. 빈빈한 밀수자의 희생」『朝鮮日報』, 1933년 11월 22일자; 「稅關吏發銃 密輸人被殺」『東亞日報』, 1935년 2월 3일자.

2명 사망, 2명 중경상, 1명은 행방불명되었다.[93] 또한 1933년 8월에는 밀수출 도중 발각되어 운반업자 19명이 익사했고,[94] 1933년 9월에도 세관원의 발포를 피하려다가 10여 명이 넘는 운반업자가 강물로 뛰어들어 익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조직적 밀수출이 격감하던 1936년 8월에는 운반업자 25명 익사한 사건도 있었다.[95] 심지어 안동해관의 밀수출 단속으로 100여 명이 강물로 뛰어들었고, 그 중 30여 명은 행방불명, 2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96] 당시 운반업자의 익사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만주국 단속 관헌이 살해하고 익사로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을 정도로 만주국의 단속은 상당히 무자비했다. 만주국 수립 전에는 인원수와 조직력으로 해관원을 압도했던 운반업자들은 만주국 수립 이후 안동 세관리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물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만주국 수립 이후 운반업자는 무장, 인원수와 조직력이 세관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성공한 밀수출도 단속을 당했다. 운반업자 정익문은 밀수품 면포(180원)를 안동현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파출소 순사에 발각되었다. 그러자 도망치던 그에게 경찰관이 총격을 가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97]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밀수취체령』의 '제4조 제1조에 위반한 자의 소유 또는 소지한 화물은 그

93) 在安東領事 米澤菊二→外務大臣 子爵 齊藤實, 「滿洲國遼東警察隊ノ密輸鮮人射殺ニ關スル件」, 1932년 6월 23일자, 206면(B09040547900).

94) 植田大使→有田外務大臣, 「第七四八號」, 1933년 8월 7일자, 103면(B09040535600).

95) 崔鳳天(최봉천)외 약 96명은 8월 3일 동지 鄭益鉉(정익현)외 9명으로부터 인견류 약 5,000원 어치를 밀수출 해줄 것을 의뢰 받았다. 그것을 傳馬船 3척에 적입해 신의주강안에서 밀수출을 기도했다. 그런데 안동 관헌의 단속이 엄중했기 때문에 결행치 못하고, 다음날 4시 10분경 영림서 하류 제2수문에서 약 4백 미터 지점에 정박했다. 그런데 안동세관감시선박(10여명 탑승)이 월경해 밀수선박을 추적했다. 그것을 인지하고 운반업자는 조선측 강안으로 도주했고, 세관감시선은 권총 2발을 발포하며 전속력으로 추적했다. 세관원은 각자 배트 및 단도를 휴대하고 밀수선으로 넘어가서 난투극을 벌였다. 그때 화력에서 밀린 운반업자는 목숨을 위협받자 강으로 뛰어 들었다. 그런데 유속이 빨라서, 25명의 익사 및 행방불명자가 나왔다[桝谷領事→有田外務大臣, 「第二六號」, 1936년 8월 8일자, 104면(B09040535600)].

96) 「密輸는 國境의 常事 殺傷은 人道問題」 『朝鮮日報』, 1936년 8월 7일자.

97) 「綿布密輸犯一名 警官發砲로卽死」 『東亞日報』, 1933년 7월 26일자.

것을 몰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이었다. 「밀수취체령」으로 몰수한 밀수출품 가액은 1932년 4월 동안 330,811원일 정도로 이전에 비하면 적용이 상당히 늘었다.[98]

이러한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으로 1933년에는 운반업자 40명이 사망할 정도였다.[99] 안동해관이 밀수자를 상습적으로 학살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100] 그야말로 무주공산에서 자유무역처럼 행해지던 밀수출은 이제 사선을 넘는 일이 되었다.[101]

생존을 위협하는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에 대해 운반업자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충돌 회피이다. 총격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아지면서, 안동세관에게 밀수출 시도가 발각되면 뱃머리를 돌릴지 말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정도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박치목 살인사건이다. 밀수출을 하던 도중 안동 경찰관을 발견한 박치목은 그대로 안동부두에 상륙하자고 했고, 장재련은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그때 홍재봉이 박치목을 갈고리로 쳐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102] 요컨대 박치목의 주장처럼 그대로 안동에 상륙한다면, 총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치목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만주국 수립 전에 공격적이었던 운반업자들은 최대한 안동세관과 충돌을 회피하고자 했다.

둘째, 뇌물 증여이다. 안동 경찰서는 면사포상 수명을 취조 중 봉황성 경찰서 고등계 주임 경부보와 조선인 순사보 2명, 원순사보 4명에게 밀수출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운반업자 두목이 뇌물을 증여한 사실을 발각했다.[103] 이처럼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운반업자들은 만주국

98) 新義州稅關長→朝鮮總督府財務局長, 「新義州安東間密輸取締ニ關スル件」, 1932.5.2.(B09040547800).

99) 「國境의 密輸出者 四十餘名이 犧牲」 『東亞日報』, 1934년 2월 3일자.

100) 「安東서 犯人取扱은 法治 朝鮮의 侮辱」 『朝鮮日報』, 1936년 8월 11일자.

101) 「鴨江結氷따라 警戒森嚴 死線의二千餘密輸團」 『東亞日報』, 1933년 12월 23일자.

102) 「棉布密輸群 싸움 끝에 殺人」 『東亞日報』, 1934년 5월 30일자.

103) 이번엔 安東縣署에 不祥事件」 『東亞日報』, 1934년 4월 26일자; 國境에 檢擧騷動」 『東亞日報』, 1934년 5월 9일자; 「瀆職警部補等 六日豫審廻附」 『東亞日報』, 1934년 5월 10일자.

관계 관헌을 최대한 피하거나, 뇌물 증여를 통해 생존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밀수출을 하고자 했다.

셋째,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밀고자와 단속 관헌에 대한 복수가 있다. 만주세관원과 운반업자의 갈등은 조선인과 안동세관원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세관원은 밀수혐의가 있다며 마구잡이로 폭행하거나 여성의 음부 검사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밀수출품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탐정견이 무고한 조선인을 물기도 했다.[104] 이처럼 '무관용 단속'은 강상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 통로인 압록강 철교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평북도회 장기식 의원은 탐정견으로 조선 인민 다수가 희생하고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그는 만주국과 조선의 민족 협화를 표면에 내걸면서도 실상은 만주통치를 위해 조선인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105] 이같이 조선인 사회는 '무관용 밀수출 단속'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한편 약 100여 명의 운반업자들이 화물열차 단속을 위해 신의주역에 하차한 안동세관원 4명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106] 이들은 안동세관원의 '무관용 단속'에 대한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밀수단은 만주세관선을 침몰시키거나, 신의주로 업무차 방문한 안동세관원을 무차별 폭행했다. 또한 밀수단을 사살한 안동세관원을 린치하는 등의 복수도 끊이지 않았다. 외면적으로 운반업자는 단속 관계 관헌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봤지만, 내면에는 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있었다.

적대적인 감정은 밀고자에게도 표출되었다. 밀수출품 운반업자 김옥한 등은 면포를 밀수출 하다가 발각되어 면포를 모두 압수당했다. 김옥한은 신경도의 밀고로 발각된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안 김옥한은 그를 구타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107] 또한 운반업자의 가족 100여 명이 칼과 곤봉을 들고 안동세관에 운반업자를 밀고한 사람을 발견하는 대로 칼로 찌르고 곤봉으로 구타한 사건

104) 「愈出愈暴의稅官吏」『東亞日報』, 1935년 5월 27일자; 「新義州의稅關吏가 婦女를 解衣搜査」『東亞日報』, 1935년 10월 30일자.

105) 「滿州國稅關吏 取締犬使用不當」『東亞日報』, 1936년 3월 14일자.

106) 「百餘名密輸團의 安東稅關吏를 毆打」『東亞日報』, 1935년 8월 14일자.

107) 「惡質密輸業者 마침내 法網에」『조선중앙일보』, 1936년 7월 12일자.

이 일어나기도 했다.[108] 앞서 신의주 경찰서에서 밀수출을 적극 단속한다면 지역의 치안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은 일제의 대중국 수출 증진이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만주국의 재정확보가 우선시 되면서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이 격감하자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결국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에 의해 운반업자들은 만주국 성립 이전처럼 밀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1934년 이후로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통과상품의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은 소멸했다.[109] 임시응급의 예외적 조치로써 1937년 9월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이 시행되었고, 선만간 국경관세 특례가 확대하는 한편 무역 통제가 강화되면서[110] 100여 명의 운반업자가 다량의 상품을 밀수출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대표적인 밀수출품 상품이었던 면포는 1938년 6월 면제품을 만주국, 관동주,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부령이 개정되었다.[111]

신의주 세관장은 만주국의 '무관용 단속'과 일제의 통제경제로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업은 격감했지만 곡물, 설탕, 모피, 보석류, 사진기, 은 등의 밀수입과 견포, 화장품, 면포 식염 등의 밀수출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112] 요컨대 '대규모 조직적' 밀수출 같이 많은 인원이 압록강을 도강해서 밀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나 짐 안에 소량의 밀수품을 숨기는 방식이 증가했다. 소규모 밀수로 안동에 잠깐 다녀오면 밥벌이는 되는 형편이므로 신의주 빈민층은 다른 도시의 세민층 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할 정도였다.[113] 또한 대규모

108) 「악에 오른 가족 궐기. 밀고자 난자 소동. 칼과 곤봉 들고 신의주 시내 횡행 경찰은 비상 소집 경계」『朝鮮日報』, 1936년 8월 7일자.

109) 「解氷앞두고未明의鴨江上에 密輸群最後突擊戰」『東亞日報』, 1936년 2월 21일자; 「非常時를 反映하야 國境密輸도 減少 計劃的犯行은 全無」『每日申報』, 1938년 9월 18일자.

110) 송규진, 2001 『日帝下의 朝鮮貿易 硏究』, 民族文化硏究院 참조.

111) 위의 책, 181-182면.

112) 新義州稅關, 1938 『新義州港一般』, 新義州稅關, 33-34면.

113) 「大都市의 府勢擴張案(八) 新義州篇〈完〉」『東亞日報』, 1936년 1월 9일자; 「昨年中犯罪數 三千四百件」『東亞日報』, 1936년 1월 31일자; 「窮乏の密輸轉向者四百戶を農耕に」『朝鮮新聞』, 1937년 3월 20일자.

의 물품이 아닌 금 같이 소량으로도 이윤이 큰 상품은 금은상→화주→밀수운반업자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114] 요컨대 밀수의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제국의 틈새 속에서 생계유지 수단을 밀수로 삼는 조선인들이 많았으며, 이후 이들은 통제경제에 균열을 가하고 있었다.

4. 맺음말

1929~1931년(만주국 성립 이전)의 조직적 밀수는 일본의 과잉생산품 소비와 대중국 중국경제 침략의 일환이었다. 특히 만주사변과 만주국 초기 혼란을 틈타서 밀수는 더욱더 격증했다. 사실상 안동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고, 일본의 군수품으로 송장을 위조해서 내륙까지 상품을 밀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신의주의 밀수출품 운반업자는 실업난 속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밀수출품 운반업에 종사했다. 이들은 다른 직업이 없는 자들로 '무뢰한 운반조직'이었으며 이들의 생계유지는 일제의 중국 경제침략이라는 이해관계와 중첩되어, 밀수출은 제국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안동부속지-중국해관-압록강 수면-조선총독부의 관할 구역이 중첩 속에서 생긴 틈을 이용한 일본 통과상품의 대중국 밀수출은 ①중국의 관세인상 ②일본상품 수출증진 ③일본의 안동부속지 행정권 남용 ④조선총독부의 실업문제 분출구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만주국 성립 이후 밀수업은 운반업자의 생계유지에서 여전히 중요했다. 그런데 제국의 이해관계가 만주국 재정수입확보로 전환되었다. 이에 만주국은 밀수출을 적극 단속했다. 만주국은 총포를 적극 사용하여, 조직적인 운반업자를 단속했고, 운반업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속출하였다. 그야말로 생계유지를 위한 밀수출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운반업자들은 충돌회피, 뇌물, 복수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목숨을 바꿀 만큼의 유인 효과는 사라져 '대규모·조직적' 밀수출 운반업은 격감하기 시

114) 外務省通商局, 『朝鮮・滿洲よりの金密輸事情報告』(B09040535700), 1940년 7월.

작했다. 요컨대 중일전쟁 이후 무역 통제에 따라 더 이상 유용한 밀수출 방법이 아니었다.

그런데 만주국과의 시세차익을 노린 소규모 밀수, 금의 밀수출, 은의 밀수입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빈민의 생계유지는 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해 갔으며, 그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제국의 이해관계와 중첩되기도 하고, 균열을 내면서 빈민의 생계유지로서 밀수는 여전히 작동했다. 본고는 통제경제 위반과 밀수의 상관관계 분석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이 시기 밀수의 양상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 신의주, 안동, 세관, 밀수, 만주국, 국경

투고일(2020. 2. 3), 심사시작일(2020. 2. 17), 심사완료일(2020. 3. 2)

〈Abstract〉

Changes in the crackdown on 'Shinuiju/Andong's smuggling operations and the responses of the traffickers of smuggled goods (1929-1937)

Kim, Taehyun *

The organizational smuggling of 1929~1931 (before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was a part of consuming excess products of Japan and invasion of the Chinese economy against China. In particular, smuggling surged during the Manchuria Incident and the early chaos of Manchukuo. Andong was technically a deserted mountain, and there were frequent smuggling of goods inland by forging their invoices as Japanese military supplies. Forwarders of smuggled goods from Sinuiju transported those goods to support themselves during the unemployment crisis.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although the forwarders still needed to support themselves for livelihood, the needs of the Empire changed to securing funds for Manchukuo. Therefore, smuggling became a problem that needed to be regulated. Manchukuo actively used firearm to regulate organizational forwarders, and casualties and injuries appeared. In other words, smuggling to support oneself became an issue of survival related to life and death.

The forwarders attempted to avoid clashes, bribe or revenge. However, as the pull effect of smuggling was insufficient to risk lives, "large-scale organizational" smuggling industry started to plummet, and it became no longer effective due to the trade control after the Sino-Japanese War. As such, organizational smuggling ceased to exist.

Key Words : Shinuiju, Andong, Manchukuo, smuggling, Borde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